

광명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정	2016. 12. 20	훈령	제377호
일부개정	2019. 12. 20	훈령	제41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1. 6. 10	훈령	제420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1. 9. 28	훈령	제423호
일부개정	2022. 8. 2	훈령	제43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4. 4. 9	훈령	제4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수·채용 등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소속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청원경찰의 정수) 청원경찰 정수는 총 41명으로 하며, 부서별 정원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정수의 조정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의 신설 또는 종료, 행정조직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수를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6에 따른 당연퇴직자 발생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여건 및 해당 부서의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정수를 신규로 추가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책정목적, 책정인원, 시 재원,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경찰 임용) 청원경찰을 임용할 경우 법 제5조를 따르고 인사부서에서 임용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재직관리 등) ① 인사부서는 청원경찰을 채용한 때에는 인사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또는 퇴직한 청원경찰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발급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신분증) ① 인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신분증을 항상 휴대·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대외직명)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감독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및 복무에 관하여 지휘·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인사·감사·복무총괄부서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청원경찰 복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복착용)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등)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근무일,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청원경찰은 제10조에 불구하고 소속 부서장의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청사 경비, 화재, 그 외의 사고에도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현업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은 현업부서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출장) ① 배치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4. 9]

제14조(휴가) ① 청원경찰 휴가에 대해서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9. 28>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일 전 180일이 되는 날부터 정년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60일의 퇴직 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9. 28, 개정 2024. 4. 9>

제15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6조(포상) 시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광명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청원경찰의 징계는 법 제5조의2, 시행령 제8조 및 「광명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훈령 제41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청원경찰 부서별 정원표(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서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응복합도시정책과</td> </tr> </table>	부서별	응복합도시정책과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서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도시계획과</u></td> </tr> </table>	부서별	<u>도시계획과</u>
부서별					
응복합도시정책과					
부서별					
<u>도시계획과</u>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21. 6. 10 훈령 제420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계획과’를 ‘신도시계획과’로 한다.

부칙 <2021. 9. 28 훈령 제42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 훈령 제43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토지과’로, ‘신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24. 4. 9 훈령 제44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 8. 2>

청원경찰 부서별 정원표(제3조 관련)

부 서 별		청원경찰 정원
총	계	41
본	청 소 계	29
	주 택 과	4
	체 육 진 흥 과	2
	총 무 과	13
	민 원 토 지 과	1
	가 로 정 비 과	4
	도 시 계 획 과	4
	건 강 생 활 과	1
	의 회 소 계	1
	의 회 사 무 국	1
	사 업 소 소 계	11
	광 명 도 서 관	3
	철 산 도 서 관	4
	하 안 도 서 관	3
	소 하 도 서 관	1